# 업무협약서

주식회사 플랜바이테크놀로지스(이하 '갑'이라 한다)와 곽태욱(이하 '을'이라 한다)의 양 당사자(이하 '당사자'리 한다)의 사이에서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우호협력 및 상호신뢰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이하 '본 업무협약' 및 '본 업무협약서')를 체결한다.

## 제1조(본계약의목적)

본 업무협약서는 제3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, 양 당사자가 최선의 이익을 달성하고, 상호 공정한 협력관계를 형성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(상호신뢰 및 신의성실)

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사는 상호간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한 자세로 상호 협력한다.

## 제3조(업무협약범위)

본 업무협약서에 의한 제휴협력관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기타 업무협약에 대한 사항 - MVP 기획 및 개발

#### 제4조(양당사자의업무협력방법)

- 1. 양당사자는 본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2. 업무협력을 긴밀히 수행하기 위한 정보교환은 일차적으로 각 사의 담당자를 통해서 시행한다.
- 3. 전 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나 추가 확인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, 상대방은 신의칙에 따라 회신, 답변하기로 한다.
- 4.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직원이나 상대방의 위임을 받은 외부 전문가 등 인력이 자신의 회사에 사전 방문이나 면접 질문, 실사 등을 허용하기로 한다.

## 제5조(업무 및 역할분담)

- 1. '갑'과 '을'의 각 기관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호간 역할을 나누어 성실히 이행한다.
- 2. '갑'과 '을'은 본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관련 법에 따라 현실적인 업무협력이 가능하도록 각자의 역 할과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.
- 3. '갑'과 '을'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역할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우선적으로 수립하고, 상호간에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한다.

## 제6조(갑의 업무와 역할)

1. '갑'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을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

다. '갑'은 경영에 있어 서비스 기획 총괄 업무를 맡기로 한다.

- 2. '갑'은 연구 및 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업무와 역할을 한다.
  - 개발 환경 세팅

### 제7조(을의 업무와 역할)

- 1. '을'은 연구 및 개발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업무와 역할을 한다.
  -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 자문

## 제8조(출자금)

- 1. '갑'은 공동협력분야에 대한 금전출자의무를 지지않는 대신, 현물이나 노동력 등 다른 방식의 출자를 한다.
- 2. '을'은 공동협력분야에 대해 금전출자의무를 지지않는 대신, 현물이나 노동력 등 다른 방식의 출자를 한다.

## 제9조(비밀준수)

- 1. 양 당사자는 본 업무협약서의 체결 및 내용뿐만 아니라 본 업무협약서에 따라 교환되는 사업계획, 재무 및 자금 수급 내역, 기술 내역 등 일체의 문서나 정보는 본 업무협약서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약 정하고,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본 업무협약서에서 정한 공동 사업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러한 비밀준수 의무는 본 업무협약서의 유효기간이 종료한이후에도 같다.
- 2. 본 업무협약서 체결 후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나 이메일 등으로부터 수수한 정보는 제2조에서 정한 본 업무협약서의 목적인 공동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한 채로 본 업무협약서가 종료되는 경우, 위 서류나 정보는 교부받은 당사자에게 반환하고 그 성질상 반환하기 어려운 정보나 사본 등 일체의 정보는 폐기한다.

## 제10조(비용 발생에 대한 약정)

- 1. 본 업무협약서의 이행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으로 한다.
- 2. 단,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보나 자료의 생성, 교부 등에 있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, 사전에 그 예상 비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,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등 보전하기로 하되, 비용 발생 전에 구체 적인 비용 액수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.

# 제11조(업무협약서 유효 기간)

- 1. 본업무협약서는 체결일로부터 2023.08.06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.
- 2. 단, 위 유효기간 전이라도 양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조기 종료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# 제12조(본업무협약서의해지)

- 1. 본 계약 '업무협약 범위'에서 정한 공동사업을 당사자가 이행, 달성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- 2. 전항 규정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당사자 일방은 그 사유가 발생한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

할 수 있다.

- 가. 본 업무협약서 상의 제반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나. 일방 당사자에게 파산, 회생,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
- 다. 주요 자산에 대한 압류 및 가처분, 기타 본안 소송 등의 제기로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고 판단되는 경우
- 라.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### 제13조(기타사항)

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하기로한다.

## 제14조(협약의 효력)

- 1. 양 당사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고,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.
- 2. 전자서명을 통해 본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서의 작성, 서명, 교부에 대한 전자적 방법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진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#### 2023년 07월 24일

갑

법인명: 주식회사 플랜바이테글놀로지스

대표이사: 노현섭(서명 또

주소: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7, 2층 (역삼동, 오렌지플래닛)

전화번호: 070-8080-4380

9

성명: 곽태욱(서智)旺至10年)

주민등록번호: 980412-1

주소: 서울 강동구 상암로 111 (천호동, 광채빌라)

전화번호: 010-9203-2837